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실시계약 BUT 기술 실시 불가 상황에서 기술료 지급의무 판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11. 29. 선고 2022가단125049 판결



1. 국가연구개발과제 결과를 기술도입, 실시기업의 주장요지

(1) 도입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기술료를 지급할 수 없다.

(2) 개발완료 이후 승강기 안전기준, 검사기준, 설치기준, 인증기준 관련 국내법이 전면 개정되어 기술을 이용한 제품은 판매가 불가능하게 되었음. 제품 상용화 불가능 상황, 기술사용을 포기하고,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

2. 쟁점

(1)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술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개정을 이유로 계약해지 가능한지 여부

3. 판결 요지

(1) 기술료 지급의무 판단 - 계약상 착수기술료와 경상기술료를 구분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착수기술료는 계약에서 정의한 기술(에스컬레이터의 장애인 탑승모드

전환장치, 에스컬레이터의 휠체어 스톱퍼 장치 등)을 사용, 생산 또는 판매하는

권리를 갖는 대가이고, 경상기술료는 실제 판매에 따른 이익 중 원고에게 분배하

기로 한 금원이라고 해석된다. 즉, 착수기술료는 기술 사용 결과에 관계없이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자체에 대한 대가이다. 실제 사용 여부를 묻지 않고

발생하며 특히 제9조의 취지에 따르면 기술의 실용화가 성공하지 못하였다고 하

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2) 계약상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 사용을 포기하여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도 착수기술료 지급의무는 남아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위 조항들의 취지를 고

려할 때 피고가 기술 사용을 포기한다고 하여(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술 사용을 포기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착수기술료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3) 계약해지 여부 판단 -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가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 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12175 판결).

(4) 계약 후 법령 개정으로 피고가 이전받은 기술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지 보건
대, 승강기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되고 이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행정안전부고시)도 전부 개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는 교통약자용 에스컬레이터를 개정 승강기 안전기준에 부합하도록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실시권을 갖고 있는 기술이

위 고시의 어떤 규정을 충족할 수 없어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가 없다.

- (5) 피고는 향후 시행되는 안전기준, 검사기준, 설치기준, 인증기준에 따라 JIS 기반 제품을 EN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개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엘레베이터로 기능대체, 개발비용 대비 제품의 신뢰도 저하, 관리비용 과다, 장애인이 안전상 이유로 사용 거부)로 시장성이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라고 주장하나, 시장성이 있는지 여부가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계약 제9조에 의하면 실시기업이 시장성 변동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감수하기로 하였다고 해석된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11. 29. 선고 2022가단125049 판결

행정소송, 행정심판, 이의신청, 집행정지, 민형사소송, 법률자문, A~Z 수행경력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